



CIRCULAR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
Gangseo-gu, Busan, 618-814
Republic of Korea

Phone : +82-70-8799-8512
Fax : +82-70-8799-8419
E-mail: jsupark@krs.co.kr
Person in charge : Park Jae-sung

To: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

No : 2018-1-E
Date : 2018.2.21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목 (Subject) | 9.110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(규칙 및 지침 1편) |
| 적 용 (Application) | 2018년 3월 1일 (검사 신청일 기준) |

1. 2018/2019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/적용지침 1편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이 내용 중 규칙사항은 2019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19년판 선급기술규칙에, 적용지침사항은 2018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18년판 선급기술규칙에 각각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= 아 래 =

- 1) 선택적 부기부호에 한해서만 정지 및 철회 요건 추가 및 제조후 등록 및 선급이전(TOC)시 제출될 도면 중 선체선도(lines) 요건 수정 등

첨부: 선급 및 강선규칙/적용지침 1편 ----- 1부. (끝)

기술본부장 김 창욱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

(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)

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선급부호</p> <p>201. 선급부호 【지침 참조】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부여하는 선급부호는 다음에 따른다. <이하 생략> (1) ~ (4) <생략> (5) 추가설비부호 추가설비에 대한 부기부호로서 LI, CHA, HMS, HMS1 등과 같은 선체사항은 선체부호 다음에, CMA, UMA, DPS, NBS, IGS, COW, STCM, RMC 등과 같은 기관사항은 기관부호 다음에 부기한다.</p> <p><이하 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9 절 선급정지, 탈급 및 재등록</p> <p>901. 선급정지 및 회복 1. ~ 7. <생략> <추가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선급부호</p> <p>201. 선급부호 【지침 참조】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부여하는 선급부호는 다음에 따른다. <이하 생략> (1) ~ (4) <생략> (5) 추가설비부호 <u>(가) 추가설비에 대한 부기부호로서 LI, CHA, HMS, HMS1 등과 같은 선체사항은 선체부호 다음에, CMA, UMA, DPS, NBS, IGS, COW, STCM, RMC 등과 같은 기관사항은 기관부호 다음에 부기한다. (2018)</u> <u>(나) 이러한 부호는 선박제조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, 요건에 만족함을 확인 후 부여할 수 있다. (2018)</u></p> <p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9 절 선급정지, 탈급 및 재등록</p> <p>901. 선급정지 및 회복 1. ~ 7. <생략> <u>8. 선택적 부기부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, 해당 부기부호에 한해서만 정지 또는 철회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선급은 계속 유지된다. (2018)</u></p> |

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

(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)

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3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</p> <p>401. 제조후등록검사 <생략></p> <p>402. 도면의 제출</p> <p>1. 제조후등록검사 시에는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선박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의 목록을 추가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제출받아야 한다.</p> <p>(1) 선체관계 : 각 3부씩 제출(다만, (자), (차), (타), (하) 및 (거)는 2부 제출)</p> <p>(가) 일반배치도</p> <p>(나) 중앙횡단면도</p> <p>(다) 강재배치도</p> <p>(라) 외판전개도</p> <p>(마) 횡격벽 구조도</p> <p>(바) 타 및 타두재 구조도</p> <p>(사) 선미재 구조도</p> <p>(아) 창구덮개 구조도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(자) 용적도</p> <p>(차) 적하지침서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(카) 적하지침기기 시험성적서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(타) 선체선도(만재흡수선의 지정을 회망하는 경우)</p> <p>(파) 목재 적재 장치도(목재 만재흡수선의 지정을 회망하는 경우)</p> <p>(하) 복원성자료(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포함)</p> <p>(거) 손상복원성자료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<이하 생략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선급등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3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</p> <p>401. 제조후등록검사 <생략></p> <p>402. 도면의 제출</p> <p>1. 제조후등록검사 시에는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선박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의 목록을 추가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제출받아야 한다.</p> <p>(1) 선체관계 : 각 3부씩 제출(다만, (자), (차), (타), (하) 및 (거)는 2부 제출)</p> <p>(가) 일반배치도</p> <p>(나) 중앙횡단면도</p> <p>(다) 강재배치도</p> <p>(라) 외판전개도</p> <p>(마) 횡격벽 구조도</p> <p>(바) 타 및 타두재 구조도</p> <p>(사) 선미재 구조도</p> <p>(아) 창구덮개 구조도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(자) 용적도</p> <p>(차) 적하지침서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(카) 적하지침기기 시험성적서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<u>(타) 선체선도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(해당선박에 한함) (2018)</u></p> <p>(파) 목재 적재 장치도(목재 만재흡수선의 지정을 회망하는 경우)</p> <p>(하) 복원성자료(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포함)</p> <p>(거) 손상복원성자료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<이하 생략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403. 타선급선의 등록검사</p> <p><생략></p> <p>1. 제출도면 및 자료</p> <p>(1) 선체관계 : 각 1부씩 제출</p> <p>(가) ~ (라) <생략></p> <p>(마) 횡격벽 구조도</p> <p>(바) 타 및 타두재 구조도</p> <p>(사) 선미재 구조도</p> <p>(아) 창구덮개 구조도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(자) 용적도</p> <p>(차) 적하지침서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<u>(카) 선체선도(만재흡수선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)</u></p> <p><u>(타) 목재 적재 장치도(목재 만재흡수선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)</u></p> <p><u>(파) 복원성자료(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포함)</u></p> <p><u>(하) 손상복원성자료(해당 선박에 한함)</u></p> <p><u>(거)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공통구조규칙(규칙 11편, 12편 또는 13편)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각 구조요소에 대한 건조두께, 신환두께 및 모든 자발적인 추가두께를 나타내는 도면</u></p> <p><이하 생략></p> <p>3.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도면에 대하여는 402.에 따른다.(다만, 개조관련 도면은 각 3부씩 제출)</p> <p>(1) 상위 항해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</p> <p>(2) 개조사항이 있는 경우</p> <p>(3) 선박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</p> <p>(4) 국적이 변경되어 추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</p> <p><이하 생략></p> | <p>403. 타선급선의 등록검사</p> <p><현행과 동일></p> <p>1. 제출도면 및 자료 (2018)</p> <p>(1) 선체관계 : 각 1부씩 제출</p> <p>(가) ~ (라) <현행과 동일></p> <p>(마) 횡격벽 구조도</p> <p>(바) 타 및 타두재 구조도</p> <p>(사) 선미재 구조도</p> <p>(아) 창구덮개 구조도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(자) 용적도</p> <p>(차) 적하지침서(해당 선박에 한함)</p> <p>(카) 선체선도(만재흡수선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)</p> <p><u>(카) (타) 목재 적재 장치도(목재 만재흡수선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)</u></p> <p><u>(타) (파) 복원성자료(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포함) (2018)</u></p> <p><u>(파) (하) 손상복원성자료(해당 선박에 한함) (2018)</u></p> <p><u>(하) (거)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공통구조규칙(규칙 11편, 12편 또는 13편)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각 구조요소에 대한 건조두께, 신환두께 및 모든 자발적인 추가두께를 나타내는 도면 (2018)</u></p> <p><현행과 동일></p> <p>3.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도면에 대하여는 402.에 따른다.(다만, 개조관련 도면은 각 3부씩 제출) (2018)</p> <p>(1) 상위 항해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</p> <p>(2) 개조사항이 있는 경우</p> <p>(3) 선박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</p> <p>(4) 국적이 변경되어 추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</p> <p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 |